

第58回議會

楊州郡議會本會議會議錄

附錄

楊州郡議會事務課

目 次

1. 第58回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 件	1 面
2. 楊州郡準農林地域內宿泊業所等設置制限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의 件	2 面
3. 京畿道議會 基礎自治團體 道費 補助金에 對한 行政事務調查 反對決議文 採擇의 件	7 面
4. 楊州郡議會에 出席·答辯할수 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面
5. 楊州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1 面
6. 楊州郡廢棄物關聯過怠料賦課·徵收業務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12 面
7. 第58回議會(臨時會) 議事日程 o '98年度 地方債 發行計劃	57 面 58 面

【 1 】 제58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제의년월일 : 1997. 7. 22.

제 의 자 : 의 장

□ 제안이유

제58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회 기 : 1997. 7. 26 (1일간)

【 2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증개정조례안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1997. 7. 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1997년 6월 25일 양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만으로 한정
(안 제4조 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및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수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1호)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지역내 농지나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한 조항은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협의후 가능하도록
한 규정되어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4호)